

## 윤리경영 협력사 협약서

본 협약서는 [주]한국화장품제조(이하 “갑”)와 [협력사명](이하 “을”)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## 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갑과 을이 법령과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며,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적용 범위)

본 협약은 갑과 을 간의 모든 계약, 납품, 용역 및 협력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. 철저히 준수한다.

### 제3조 (윤리경영 기본 원칙)

을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.

1. 관련 법령 및 계약사항 준수    2. 부정행위, 허위·과장 행위 금지  
 3. 공정하고 성실한 거래 수행    4. 상호 존중과 신뢰 기반의 협력

#### **제4조 (금품·향응 제공 금지)**

은 거래와 관련하여 갑의 임직원에게 금품, 향응, 접대 또는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.

## 제5조 (기밀 및 정보 보호)

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기술정보, 거래정보,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.

## 제6조 (인권·안전·환경)

은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며, 산업안전 및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.

## 제7조 (위반 시 조치)

이를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같은 시정요청, 거래 조건 조정, 계약 해지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제8조 (협약 효력)

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갑과 을 간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.

## 제9조 (기타)

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.

본 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,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월간예수

갑

一一

회사명 :

회사명 :

대표자 : ( )

대표자 : (인)